

|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06154    |
| 의 퇴 인  | 정성국의원      |
| 회 답 일  | 2025.2.11. |
| 추 계 번호 | 24D5652    |

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후보자 최종학력의 진위를 확인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,500만원, 2030년 1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,300만원(연평균 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-----|
| 후보자 최종학력의 진위 확인<br>(안 제49조제15항) | 15   | 0    | 2    | —    | 16   | 33 | 7   |

주: 1. 후보자 최종학력의 진위 확인(안 제49조제15항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 
 2. 본 추계는 최종학력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후보자 수를 직전 공직선거의 대졸 이상 학력의 후보자 중 6.7%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49조제15항<br>(후보자 최종학력의 진위 확인) |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최종학력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(한글번역문 포함)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| 의무규정 |

## 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49조제15항<br>(후보자 최종학력의 진위 확인) | 0    | —             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후보자의 6.7%를 개정안에 따라 최종학력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수로 가정
  - 최종학력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대졸 이상으로 한정하고, 최종학력이 국내 교육기관인 경우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  - 다만, 외국의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해외학위조회지원서비스 등의 이용이 필요하여 수수료 발생
  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후보자 중 외국 교육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
  - 이에 본 추계에서는 2007~2023년 동안의 박사학위취득자 중 외국박사학위취득자 비율(6.7%)<sup>1)</sup> 만큼 개정안에 따른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<sup>2)</sup>
-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1) e-나라지표의 국내/외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을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합계하여 살펴보면,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총 244,009명이고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는 총 16,411명으로 6.7%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)

|               | 2023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~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(CPI) | 3.6% | 2.5% | 2.1% | 2.0% | 2.0% | 2.0% | 2.0%  |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대졸 이상의 최종학력을 국외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후보자에 대하여 최종학력의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
-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예정되어 있는 공직선거에서 최종학력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수에 최종학력 진위 확인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곱하여 산출
  - (대상자 수) 2026년과 203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364명, 2027년 대통령선거는 1명, 2028년 국회의원선거는 59명으로 추정
    - 직전 공직선거에서 대졸 이상 후보자 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(2022년) 5,430명, 대통령선거(2022년) 13명, 국회의원선거(2024년) 878명
    -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6.7%를 적용하면, 개정안에 따른 최종학력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(2026년, 2030년) 364명, 대통령선거(2027년) 1명, 국회의원선거(2028년) 59명
  - (수수료) 해외학위조회지원서비스의 수수료는 2023년 기준 건당 38,000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 적용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후보자 최종학력의 진위를 확인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,500만원, 2030년 1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,3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2026   | 2027   | 2028   | 2029   | 2030  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|
| 대상자 수(a, 명)           | 364    | 1      | 59     | -      | 364    | -  |
| 수수료(b, 원)             | 40,563 | 41,375 | 42,202 | 43,046 | 43,907 | -  |
| 추가재정소요<br>(=a×b, 백만원) | 15     | 0      | 2      | -      | 16     | 33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최종학력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후보자 수를 직전 공직선거의 대졸 이상 학력의 후보자 중 6.7%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이미연 | 김안나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|
| 이미연 | 02-6788-4661 | mylee@nabo.go.kr |